

의안번호	2206184
의 퇴 인	조인철 의원
회 답 일	2025. 1. 2.
추 계 번 호	24F5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성과급 및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34년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는 2026년 4,045억원, 2040년 67억원 등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총 8조 4,820억원(연평균 5,6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6~204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19조)	-255	-286	-321	-360	-406	-458	-51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29조의6)	-	-	-	-	-	-61	-6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30조의4)	-3,790	-7,640	-7,747	-7,837	-7,915	-7,982	-8,046
계	-4,045	-7,926	-8,068	-8,197	-8,321	-8,501	-8,626
	2033	2034	2035	...	2040	누적	연평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19조)	-586	-664	-753		-	-4,607	-46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29조의6)	-62	-63	-64		-67	-640	-6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30조의4)	-8,107	-8,163	-8,221		-	-79,573	-7,234
계	-8,755	-8,890	-9,038		-67	-84,820	-5,655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기한 10년 연장 － 공제·감면대상: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근로자 － 공제·감면내용: (기업)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 (근로자)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34.12.31.	
2	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적용기한 10년 연장 － 공제대상: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 공제내용: 성과보상금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청년 외 근로자: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34.12.31.	
3	안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 공제대상: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 공제내용: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일반 근로자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34.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2	안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3	안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수효과는 징수 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기업)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의 최근 3년(2022~2024년(전망)) 연평균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근로자)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전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2035년 동안 발생
-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근로자 등은 만기 공제금을 2030년에 수령하고, 해당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31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이므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31~2040년 동안 발생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신 동 제도 등 기존 공제제도를 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
 -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중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 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통합

-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고용중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선택 적용이 가능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경우, 향후 개별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보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택할 것을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함에 따라 실제보다 세수효과가 과다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이 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해에 상시근로자수의 전년대비 감소 없이 2년간 감면을 지속하여 받는다고 가정
 - 동 제도는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지속해서 공제혜택을 부여
 - 다년간 감면이 최초로 적용된 2019년 공제액(2018년 귀속분)은 모두 2018년 상시 근로자 증가기업에 대한 신규 공제실적으로 가정
- 향후 공제실적은 2023년 신규 발생한 공제액 추정치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및 명목임금 증감률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2036년 동안 발생
 - 2034년 공제요건 충족에 따라 신규 발생하는 공제의 경우, 징수기준에 따라 2036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10년 연장 (안 제19조)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동 제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시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성과급을 수령한 근로자에게는 소득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기업을 의미

- 성과공유 유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급 지급, 성과보상 공제, 임금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
 - 2021년 개정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현행 15%로 인상
- 동 제도에 따라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과 지급받은 근로자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음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근로자)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34.12.31.

□ (공제 및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적: 2022~2024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전망) ¹⁾
계	112	180	204
법인세	69	116	137
소득세	44	64	67

주: 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다음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기업)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의 최근 3년(2022~2024년) 연평균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총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제율: ('21년 이전) 10%, ('22년 이후) 15%

[표 3] 경영성과급 총지급액 추정

	2022	2023	2024(전망)	(단위: 억원, %) 연평균증가율 ('22~'24)
법인세 공제실적	69	116	137	-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추정)	690	773 ¹⁾	913 ¹⁾	15.1

주: 1) 징수기준에 따라 2023년 실적부터 상향된 공제율(15%)이 적용

- 개정안에 따른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공제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실적(전망)을 바탕으로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의 최근 3년 연평균증가율(15.1%)을 적용하여 추계

[표 4] 법인세 공제액 추정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법인세 공제액	181	209	240	276	318	366	421	485	558	642

- (근로자)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전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세 감면실적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공제)도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실적을 구분하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실적은 모두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5] 소득세 감면실적

	2023	2024(전망)	(단위: 억원, %) 전년 대비 증가율
소득세 감면실적	64	67	4.7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향후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실적(전망)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4.7%)을 적용하여 추계

[표 6] 소득세 감면액 추정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소득세 감면액	73	77	80	84	88	92	96	101	106	111

(3) 추계결과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는 2026년 255억원, 2035년 753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4,605억원(연평균 4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단위: 억원)

		'26	'27	'28	'29	'30	'3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19조)	법인세	-181	-209	-240	-276	-318	-366
	소득세	-73	-77	-80	-84	-88	-92
	계	-255	-286	-321	-360	-406	-458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19조)	법인세	-421	-485	-558	-642	-3,697	-370
	소득세	-96	-101	-106	-111	-908	-91
	계	-518	-586	-664	-753	-4,605	-461

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29조의6)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
 - 현행 성과보상기금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되, 소득세에 일정 비율 만큼 세액을 감면
 -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

-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는 2014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공제사업 만기 수령자가 발생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0년부터 발생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4년부터 발생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 만기)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

[표 8]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현황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근로자
가입기간	5년		3년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핵심인력 720 + 기업 1,500)	5년간 3,000만원 이상 (청년 720 + 기업 1,200 + 정부 1,080)	3년간 1,008만원 (근로자 504 + 기업 504)
우대혜택	만기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¹⁾		
시행일	2014.8.21.	2018.6.1.	2021.10.18.
사업기간	계속사업	~2022년(한시 사업)	계속사업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고용부

주: 1)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에 가입하여 만기를 채운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예치해야 함)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감면실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3년 기준 38억원, 2024년은 157억원으로 전망됨

-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2020년 처음 발생하고, 2024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
- 2024년 전망치는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

[표 9]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소득세	29	31	38	157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 실적과 공제사업별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5년 만기)에 2025년 가입 시, 만기 공제금 수령자는 2030년부터 발생, 소득세 감면은 203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8년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 만기)는 2024년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할 예정
 - － 다만,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수(2021~2023년 연평균 583명)가 적고, 기존 공제사업들의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
 - *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2023년 기준: 내일채움공제 39.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7.0%)
- 따라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계
 - －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되 동 실적에는 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별 조세지출

액을 구분할 필요

- 사업별로 조세지출액이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업별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

(3) 추계결과

□ 2024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조세지출액 실적(157억원) 중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약 57억원으로 추정

- 2023년의 조세지출액 실적은 대부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므로, 2023년 조세지출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증가율(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2024년도 조세지출액 추정
 -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2023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4,656명)는 2022년(3,089명) 대비 1.5배 규모로 증가
 - * 57억원(2024년) = 38억원(2023년) × 1.5
 - 2023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은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4년에 이루어짐

[표 10]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단위: 명, 억원)

가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 수	9,619	11,841	8,856	10,929	11,598	12,152	12,422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가입연도 +5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3,089	4,656	-	-	-	-	-
소득세 감면 연도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1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득세 감면액	38	57 ¹⁾	-	-	-	-	-

주: 1) 만기 공제금 수령자를 증가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에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 먼저 일몰 연장에 따른 2025~2034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를 추정하고, 최근 연도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추정

- 2025~2034년 가입자 수는 2023년 가입자 수에 최근 5년(2018년~2023년) 가입자 수 연평균 증가율(0.96%)을 적용하여 추정
-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는 2025~2034년 가입자 수(추정치)에 가장 최근 연도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2023년 0.393=4,656명/11,841명, [표 4] 참조) 적용하여 추정
-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1~2040년 연간 소득세 감면액은 61~6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표 11]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및 소득세 감면액 추정

(단위: 명, 억원)

가입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가입자 수	12,662	12,784	12,907	13,032	13,157	13,284	13,411	13,541	13,671	13,803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가입연도 +5년)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4,979	5,027	5,075	5,124	5,173	5,223	5,274	5,324	5,376	5,427
소득세 감면 연도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1년)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소득세 감면액	61	62	62	63	64	64	65	65	66	67

-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31~2040년 10년간 6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3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조세특례 일몰연장(안 제29조의6)	-61	-62	-62	-63	-64	-640	-64
	2036	2037	2038	2039	2040		
	-64	-65	-65	-66	-67		

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30조의4)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동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¹⁾ 수가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2012년 신설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50~100%를 세액공제
 - 일반 상시근로자: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 2017년 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단, 2년차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중단
-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 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다만, 기업은 2024년까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한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공제를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음

□ (감면실적)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적은 2019년 1,794억원에서 2023년(잠정) 6,201억원으로 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연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되므로, 2023년까지 실적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실적임

[표 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신고기준)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계	1,794	3,073	3,625	5,007	6,189
소득세	583	1,131	1,304	1,779	2,242
법인세	1,211	1,942	2,321	3,228	3,94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는 다년간 공제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발생연도 별로 공제를 구분

1)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 동 조세지출은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2020년 실적부터는 전년도에 신규 발생한 공제액과 금년도에 신규 발생한 공제액이 모두 포함
- 2019년 세액공제 실적은 전액 신규 발생한 공제액으로 간주하여 2020~2023년간 세액공제 실적을 신규 발생한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 2018년 세액공제 실적까지는 2017년 세법개정 이전의 제도가 적용되어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가 단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세액공제 실적은 모두 신규 공제액으로 간주
 - 공제 2년차에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이 없다고 가정하여 2019년 이후 세액공제 실적에서 전년도 신규 발생한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년도 신규 발생한 공제액으로 추정

[표 1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적의 발생연도별 구분

(단위: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액공제 실적	1,794	3,073	3,625	5,007	6,189
'19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¹⁾	1,794	1,794			
'20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1,279	1,279		
'2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2,346	2,346	
'2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2,661	2,661
'2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3,528

주: 1) 2019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18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의 신규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및 명목임금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후,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

- 개정안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5~2034년간 신규 발생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추정
 - 단,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1년)를 고려하여 t년에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t-1년의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표 1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6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¹⁾	3,790	3,790									
'27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3,851	3,851								
'28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3,897	3,897							
'29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3,940	3,940						
'30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3,975	3,975					
'3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4,007	4,007				
'3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4,039	4,039			
'3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4,068	4,068		
'34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4,096	4,096	
'35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4,125	4,125
세액공제액 계	3,790	7,640	7,747	7,837	7,915	7,982	8,046	8,107	8,163	8,221	4,125

주: 1) 2026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5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3) 추계결과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수 및 소득세수는 2026년 3,790억원, 2036년 4,125억원 등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1년간 총 7조 9,573억원(연평균 7,2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34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2035~2036년에 발생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6년까지 발생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6~2036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30조의4)	-3,790	-7,640	-7,747	-7,837	-7,915	-7,982	
	2032	2033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30조의4)	-8,046	-8,107	-8,163	-8,221	-4,125	-79,573	-7,234

IV. 부대의견

- 개별 기업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가 아닌 통합 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제1항)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과다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거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율이 기존 개별 세액공제보다 높게 적용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감면혜택을 선택할 유인이 존재함

[표 17] 개별 고용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비교: 중소기업 기준

(단위: 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100 +사회보험료(사용자분) 100%	1,200 +사회보험료(사용자분) 100%	1,450	1,550
고령 및 장애인	1,100 +사회보험료(사용자분) 50%	1,200 +사회보험료(사용자분) 50%	1,450	1,550
일반	700 +사회보험료(사용자분) 50%	770 +사회보험료(사용자분) 50%	850	950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